



호주 생명보험 자문업자의 수수료 체계 개선

김혜란 연구원

요약

■ 호주 정부는 생명보험 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의 상한과 환수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개정을 발표함. 동 개정은 생명보험 자문업자에 대한 선지급 수수료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문서비스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호주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미미한 경우 분급형 수수료 체계를 의무화할 계획임.

■ 호주 정부는 생명보험 자문업자(adviser)¹⁾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²⁾ 상한의 하향조정과 수수료 환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자문수수료 관련 규정³⁾을 개정하였으며, 동 규정은 7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2016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선지급 수수료 상한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함.
 - 선지급 수수료 상한은 2016년의 경우 초년도 보험료의 80%, 2017년은 초년도 보험료의 70%, 2018년은 초년도 보험료의 60%로 각각 조정하기로 함.
 - 2차연도부터는 보험료의 20%로 수수료를 조정함.
- 선지급 수수료 환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첫해에 계약해지 시 자문업자는 초년도에 받은 선지급 수수료의 100%를, 두 번째 해에 계약해지 시는 60%를 보험회사에게 돌려주어야 함.
 - 보험료가 감소한 경우 자문업자는 초년도 보험료에 대해 받은 선지급 수수료를 100%로 보고 감소한 초년도 보험료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함.⁴⁾
- 동 규정은 직접판매채널을 포함한 일반적(general)이고 개인적(personal)인 자문에 적용됨.

1) 자문업자는 금융상품의 추천과 자문, 그리고 체결대행을 해주고 있으며 대부분이 회사에 고용 또는 연계되어 있음(한국금융연구원(2014. 12),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용역보고서).

2) 호주의 Corporations Act 2001(s963E, 963G, 963H)은 금융상품제조업자가 금융자문업자에게 상품추천이나 자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Corporation Amendment(Future of Financial Advice) Bill 2011에서 생명보험 관련 자문은 예외로 하고 있음.

3) 생명보험 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생명보험기본법(Life Insurance Framework)으로 알려져 있음.

4) 예를 들어, 초년도 보험료가 1,000달러이고 선지급 수수료가 600달러였는데, 초년도 보험료가 500달러로 감소했다면(50% 감소) 자문업자는 300달러를 보험회사에 다시 되돌려주어야 함.

■ 이와 같은 개정은 생명보험 자문업자에 대한 선지급 수수료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문서비스 간에 역(逆)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⁵⁾

- 자문업자들은 생명보험 상품판매에 있어 높은 선지급 수수료로 인해 고객니즈에 맞지 않는 보험계약 추천 및 불필요한 승환계약 권유 등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선지급 수수료는 초년도 보험료의 100~130%이며, 2차연도 수수료는 대략 10% 정도 수준임.
 - 생명보험 자문계약 검토 결과 선지급 수수료 체계에서 45%의 소비자가 질 낮은 자문을 받은 반면, 다른 수수료 체계⁶⁾에서는 7% 정도만이 질 낮은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⁷⁾

■ 정부는 동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큰 개선점⁸⁾이 보이지 않을 경우 분급형 수수료 체계를 의무화할 계획임.

- 정부는 동 규정 이행을 위해 ASIC에 독립규제기관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임.
- ASIC는 동 규정 시행일부터 생명보험회사의 승환계약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2018년도까지 생명보험산업에 주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임.
- 분급형 수수료제도는 매년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임.⁹⁾ **kiri**

5) ASIC(2014, 10), Review of retail life insurance advice.

6) 하이브리드 수수료(Hybrid commission), 분급형 수수료(Level commission) 등을 포함하고 있음.

7)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 commission)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02개의 생명보험 자문계약을 검토하였음.

8) 중소기업부 차관 켈리 오드와이어에 의해 언급됨(<http://kmo.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24-2015/>).

9) FSI(2014, 12), Financial System Inquiry Final Report 참조.